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6092    |
| 의 퇴 인  | 안규백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5.1.14. |
| 추 계 번호 | 24D5477    |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### 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등 보충역(예술·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제외)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~2029년까지 504억 1,100만원(연평균 100억 8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억원)

| 구분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    | 연평균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장병내일준비적금<br>확대 | 0    | 0    | 17,160 | 16,804 | 16,447 | 50,411 | 10,082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79조의2<br>(적금의 정부지원) | 국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보충역(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술·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사람에 한함), 대체복무요원,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79조의2<br>(적금의 정부지원) | ○    | -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보충역(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술·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사람에 한함)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
  -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 5%에 추가하여 정부가 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하여, 전역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임
  - 2022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, ‘국방중기계획’에 따라 정부의 매칭지원금을 2022년 월 14만원, 2023년 30만원, 2024년 40만원, 2025년 55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반영하여, 추계기간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55만원으로 가정함
  -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기간은 최대 24개월로,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기간은 최대 24개월로 가정함
  -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률은 100%, 평균납입액은 2025년 지원한도의 100%인 55만원으로 가정하고, 적금만기시까지 해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<sup>1)</sup>
  -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, 병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전역으로 적금만기해지시 시 정부의 매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, 보충역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복무 중 적금만기시기(24개월)가 되면 정부의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거가 소집·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5~2029년으로 함

1) 2025년 전역대상자의 평균가입률 97%, 평균납입액 97.5%이지만,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평균가입률과 평균납입액이 거의 100%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확대(안 제79조의2)

- 보충역(예술·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제외) 임용경로별 복무기간, 임관시기, 퇴역시기, 최근 5년간(2019~2023년) 임용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2] 임용 경로별 보충역의 복무기간 및 임용자 수

(단위: 명, %)

|             | 복무<br>기간 | 임용<br>시기 | 퇴역<br>시기 | 2019  | 2020  | 2021  | 2022  | 2023  | 연평균<br>증가율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공중보건의사      | 36개월     | 4월       | 3월       | 1,211 | 1,318 | 1,035 | 1,050 | 1,114 | -2.1       |
|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| 36개월     | 4월       | 3월       | 55    | 52    | 52    | 52    | 52    | -2.1       |
| 공익법무관       | 36개월     | 8월       | 7월       | 61    | 54    | 28    | 40    | 63    | 1.5        |
| 공중방역 수의사    | 36개월     | 4월       | 3월       | 150   | 150   | 150   | 150   | 127   | -4.1       |
| 합계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1,477 | 1,574 | 1,265 | 1,292 | 1,356 | -2.1       |

자료: 병무청

- 개정안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 가입 대상자 수는 2023년 임용자 수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

[표 3] 보충역 임용자 수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명)

|             | 2025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공중보건의사      | 1,068 | 1,046 | 1,024 | 1,002 | 981   |
|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| 50    | 49    | 48    | 47    | 46    |
| 공익법무관       | 65    | 66    | 67    | 68    | 69    |
| 공중방역 수의사    | 117   | 112   | 107   | 103   | 99    |
| 합계          | 1,300 | 1,273 | 1,246 | 1,220 | 1,195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·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,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최초 적금만기는 입영 후 24개월이 지난 2027년에 발생

- 임용 및 퇴역시기를 고려할 때, 매년 24개월치의 적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

□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단가(월 55만원), 지급개월 수(24개월)를 고려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4] 보충역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합계     | 연평균   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공중보건 의사      | 0    | 0    | 14,098 | 13,807 | 13,517 | 41,422 | 8,284  |
|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| 0    | 0    | 660    | 647    | 634    | 1,940  | 388    |
| 공익법무관        | 0    | 0    | 858    | 871    | 884    | 2,614  | 523    |
| 공중방역 수 의사    | 0    | 0    | 1,544  | 1,478  | 1,412  | 4,435  | 887    |
| 합계           | 0    | 0    | 17,160 | 16,804 | 16,447 | 50,411 | 10,082 |

주: 2027년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임용자수×55만원(월)×24개월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나.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등 보충역(예술·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제외)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~2029년까지 504억 1,100만원(연평균 100억 8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억원)

| 구분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    | 연평균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장병내일준비적금 확대 | 0    | 0    | 17,160 | 16,804 | 16,447 | 50,411 | 10,082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2023년 임용자 수에 2019~2023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, 가입률 100%, 평균납입액(정부 매칭지원금) 55만원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수연 | 김안나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전수연 | 02-6788-4667 | syjeon@assembly.go.kr |